

#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17(월)  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11.25.

나. 제안자 : 최용덕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11.25.

라. 상정일자 : 2014. 2.10(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최용덕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
- 심사내용 : 질의 및 토론
-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의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순환 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하여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.
- 이를 위해 기업체 등은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함.
- 따라서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## 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(안 제9조 제3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임.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인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<sup>1)</sup>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.
-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서의 “지역주민”의 범위를 본 조례안에서는 “근거리 지역주민”으로 규정하는 것은 「헌법」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 및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7조의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어긋날 수 있고,
- “근거리 지역주민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에서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.
- 또한, 민간부분의 일자리에 어떻게 시장이 근거리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---

1)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③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,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.11.18.부터 11.28.까지(10일간)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근거리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원도심활성화 정책 등 형평성에 어긋나며 근거리 지역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.
-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
- 지역 주민의 우선채용은 해당기업과 지역 사회에서 상호간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임

##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허인환·이한구·윤제상·김영분·김정현·안병배·조영홍 의원

#### 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)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#### 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 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  
3.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 제9조제3항 중 “근거리”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<u>근거리</u>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##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9조(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